남 해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서	기관의장
람	



제 610호 2018. 6. 28.(목)

규 칙 남해군규칙 제1135호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시 卫 제2018 - 83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……………… 6 제2018 - 84호 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………………… 9 제2018 - 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12 공 卫 제 2018-698호 도시계획도로(소로2-37호 남해군창·시반기을회관)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담 공고 $\cdots 13$ 제2018 - 706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17 제 2018 - 737호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$\cdots 18$ 제 2018 - 742호 남해군 방재성능목표 공표 36 제2018 - 745호 **2018**년 남해군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관리·운영 위·수탁 현황 공고 · 38 제2018 - 751호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) 허가 공고 ። 39

구) 기					
회 람					

발행 : 남해군 편집 : 기획감사실(860-3045, 행정 3045)

규 칙

남해군 규칙 제1135호

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

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.

2018년 6월 28일

남 해 군 수

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

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136조"를 "제140조"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6조"를 "제140조"로 한다.

- 제12조의3제1항제3호 중 "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"을 "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- 제17조제1항 중 "조사개시 7일 전에"를 "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"로 하고, "법 시행령 제92조제1항"을 "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7일 이내에"를 "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"로 한다.
- 제27조제2항 중 "(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)"을 "(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)"으로 한다.

제30조제1호 중 "법 제73조"를 "지방세징수법 제22조"로 한다.

제31조제2항 중"행정안전부장관"을 "경상남도지사"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"법 제136조"를 "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"로 한다. 제3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성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세기본	제1조(목적)
법」 <u>제136조</u> 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	<u>제140조</u>
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	
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(특별징수의	
무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권익을	
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	
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	제2조(정의)
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"세무조사"란 「지방세기본	1
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6조	제140조
에 따른 질문,검사권에 따라 조사공무원이	
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, 서	
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,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	
위를 말한다. 다만 「조세범처벌절차법」에 따른	
범칙시건 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	
2. ~ 8. (생 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12조의3(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)	제12조의3(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	3
소기업 및 <u>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</u>	「 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</u>
<u>위한 특별조치법」</u> 에 따른 소상공인(취득	<u> 관한 법률」</u>
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	
를 제외한다)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)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 시 7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 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 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 ② (생 략) 1. ~ 4. (생 략) ③ (생 략) 1. ~ 4. (생 략)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결정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.	제17조(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) ① 조사를 시 작하기 15일 전까지
제27조(조사의 착수 등)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 조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자권리 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지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.	제27조(조사의 착수 등) ①
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(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)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	②(지방세기본법 (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)
제30조(세무조사 결과통지)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조 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납세자의 폐	제30조(세무조사 결과통지)

업 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 --

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경우에	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<u>법 제73조</u> 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	1. <u>지방세징수법 제22조</u>
경우	
2. ~ 3. (생 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
제31조(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)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 보는 "과세자료처리대장"에 등재하고,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	제31조(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 급) ①
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	
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 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와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②
제32조(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) ① 조사공 무원의 증표는 법 제136조에 따라 군수 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,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.	제32조(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) ① 기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33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.	제33조(준용) <삭 제>

고 시

남해군 고시 제2018 - 83호

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

「하천법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 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6월 12일

남 해 군 수

- 1. 하천공사의 명칭 : 부윤천 정비사업
- 2.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
가. 시행자 : 남해군수

나. 주 소 :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(서변리 24-1)

- 3. 하천공사의 목적 및 사유
 - 가. 목적 : 본 과업은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일원에 부윤천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목적이 있다.
 - 나. 공사개요
 - · 하천정비 : L=500m, 교량 1개소
- 4.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: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일원

- 5. 하천공사의 기간 : 2018. 6 ~ 2019. 12
- 6.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·지번·지목·면적,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(붙임 참조)
- 7. 기타사항: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경상남도 남해군 안전총괄과 복구 지원팀(☎055-860-329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토 지 소 지			지						소 유 자		관계인		
일련 번호	시·군	읍·면	리·동	지번	지목	지적면적 (m²)	편입면적	성명 및 명칭	주 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외 종류 및 내용	비고
1	남해	창선	오용	1281-50	전	27	27	김병*					
2	남해	창선	오용	1281-48	답	243	243	남해군					
3	남해	창선	오용	1281-47	답	133	133	남해군					
4	남해	창선	오용	1343	7	14,151	5,863	국(농림축산식품부)					
5	남해	창선	오용	1281-51	답	342	342	남해군					
6	남해	창선	오용	1281-52	답	206	206	정해* 외 1인					
7	남해	창선	오용	1281-53	답	540	540	남해군					
8	남해	창선	오용	1281-34	답	339	80	경상남도					
9	남해	창선	오용	996-105	답	194	91	경상남도					
10	남해	창선	오용	996-2	답	793	6	경상남도					
11	남해	창선	오용	55-2	염	101,193	1,141	학교법인창선학원					
12	남해	창선	수산	55-107	염	1,727	1,727	남해군					
13	남해	창선	수산	55-112	염	644	644	남해군					
14	남해	창선	수산	55-73	염	298	298	남해군					
15	남해	창선	수산	55-111	답	622	622	남해군					
16	남해	창선	수산	550	7	5,940	1,450	국(농림축산식품부)					
17	남해	창선	수산	55-110	답	610	610	남해군					
18	남해	창선	수산	55-109	답	500	500	남해군					
19	남해	창선	수산	55-108	답	10	10	남해군					
20	남해	창선	오용	996-116	답	481	481	김차* 외 8인					
21	남해	창선	오용	996-119	답	607	607	남해군					
22	남해	창선	오용	996-6	답	1,574	819	남해군					
23	남해	창선	오용	996-120	답	731	731	남해군					
24	남해	창선	오용	996-118	답	73	73	남해군					
25	남해	창선	오용	996-4	답	1,223	884	남해군					
26	남해	창선	오용	996-114	답	798	798	남해군					
27	남해	창선	오용	996-106	답	182	24	경상남도					

남해군 고시 제2018 - 84호

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

『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』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6월 15일

남 해 군 수

- 1. 실시계획의 개요
 - 사 업 명 : 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
 - 사업위치 :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80-3 외 12필지
 - 사업규모 : 급경사지 정비 L=100m
 - 사면 보호 계단식 옹벽(H=1.5~15.0m) : L=50.0m(10단)
 - 사 업 비 : 1.600백만원(공사비, 보상비, 설계비 등)
 - 사업기간 : 2018. 6. ~ 2018. 12.
 - 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명 : 남해군수
 - 주소 :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
 - 3. 설계도서(설계예산서 포함) : 남해군 안전총괄과 비치 및 열람 가능
 - 4.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결과
 - 타부서 및 타 기관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은 없음

- 5. 사업효과 분석
- 대사리 일원에 집중호우 시 도로와 인접한 붕괴위험지역의 정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
- 6. 연차별 투자계획

사 업 명	구분	합계	'17년까지	'18년 추진	비고
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	사업내용	· 실시설계 · 보상협의 · 급경사지정비	· 실시설계 · 보상협의	· 보상협의 · 급경사지정비	
841075	사업비(백만원)	1,600	340	1,260	

- 7.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
- 정비사업 완류 후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거 붕괴위험 지역 지정 해제토록 하고,
-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(해빙기, 우기)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 예정
- 8.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토지와 그 소유자 명세 : 붙임참조
- 9.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안전총괄과(055-860-329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】

○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•	_	, -					, ,	,	, - ,	,
일련	소재지	지 번	지목	지 적	편입 면적	소 유	자		이외의 기명세	
번호		N D	٨٦	(m²)	(m²)	성 명	주 소	권리명	권리자	비고
합계				2,048	1,833					
1	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	780-3	대	138	138	남해군				
2	"	780-10	도	33	33	박동* 외 1	남치리 172			
3	"	780-15	대	141	141	남해군				
4	"	780-19	임	162	162	남해군				
5	"	780-9	도	10	10	박동* 외 1	남치리 172			
6	"	780-2	대	221	221	남해군				
7	"	780-8	도	7	7	박동* 외 1	남치리 172			
8	"	780-14	대	52	52	남해군				
9	"	780-4	전	192	192	남해군				
10	"	627-6	대	94	94	남해군				
11	"	780-20	임	413	413	남해군				
12	"	617-3	임	322	107	경상남도(교육청)				
13	"	627-3	대	263	263	남해군				

남해군 고시 제2018 - 88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6월 19일

남 해 군 수

1. 하 천 명 : 지방하천(다천천)

2. 성 명: 박정0

3. 주 소 :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

4. 점용목적 : 배수관로 배설

5. 점용위치: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785번지(산73-3번지 인근)

6. 점용면적 : 4 m²

7. 점용기간 : 2018. 6. 19. ~ 2023. 6. 18.(5년)

공 고

남해군 공고 제2018 - 698호

도시계획도로(소로2-37호 남해군청~서변마을회관)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

남해군 고시 제2017-136호(2018.1.11.)로 기 실시계획인가된 남해군계획시설사업(교통시설: 도로, 도시계획도로 소로 2-37호)의 인가사항 변경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공람·공고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6월 11일

남 해 군 수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구분	종류	위치	비고
도시계획도로 (소로2-37호,	남해군계획시설사업	나레그 나레ㅇ 기버리 이이	
남해군청~서변마을회관) 개설공사	(교통시설 : 도로)	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	

2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구분		규	결 :	정(M)	급 ;	회(M)	비		
一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등급	류별	번호	폭(m)	폭	연장	폭	연장	고
도시계획도로 (소로2-37호, 남해군청~서변미을회관) 개설공사	소로	2	37	8	8	237	8	115	

3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○ 성명: 남해군수(도시건축과)

○ 주소 :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

4. 사업기간

 구분	사업기간				
一	당초	변경	고		
도시계획도로 (소로 2- 37호,	2017 F 2 2018 (20	2017 F 2 2010 12 21			
남해군청~서변마을회관) 개설공사	2017.5.2. ~ 2018.6.30.	2017.5.2 .~ 2018.12.31.			

5. 공람기간 :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6.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

○ 소유권 변동사항 정정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: 붙임 1 참조

8. 관계도면: 실음생략 【남해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860-3415)에 비치】

붙임: 1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1부.

2. 의견서 1부. 끝.

[붙임 1]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조서

- 1. 공사명 : 도시계획도로(소로 2-37호, 남해군청~서변마을회관) 개설공사
-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

 연 번	소레기	소재지 지번 지목		면적(m²)		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
번	소재지	시 년	지목	지적	편입	성 명	주 소	성 명	주 소	권리내용	비고
		합 계		925	824	_	_	_	_	_	_
1	서변리	305-1	대	18	18	최*익	남해군 남해읍 서변리	_	_	_	_
2	서변리	305-15	잡 .	2	2	최*익	남해군 남해읍 서변리	_	_	_	지분 (53/464)
2	시번디	305-15	· 百 ·	공유자	_	남해군	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	_	_	_	지분 (411/464)
3	서변리	306-15	도	18	18	남해군	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	_	_	_	_
4	서변리	27-7	대	504	504	남해군	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		_	_	_
5	서변리	366-25	대	282	282	남해군	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	_	_	_	_

(16) 제 610 호

[붙임 2] 의견	[붙임 2] 의견서						
	의 견 /	서					
사업명	도시계획도로(소로2-37호, 남해군	·성~서변마을회관)개설공사					
사업자	남해군수						
이거계츠기	성명	생년월일					
의견제출자	주소	전화번호					
제출의견							
기타							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 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남해군수 귀하

남해군 공고 제2018 - 706호

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

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 처분 사항 및 소멸 어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12일

남 해 군 수

○ 어업면허 처분사항

면허번호	어업의종류	포획물	어장	면허 면적	면허기간	어 업 등	권 자	처분	비고	
5052	(어업방법)	보육 <u>공</u>	위치	(m²)	원에기진	주 소	성 명	년월일	0177	
마을어업 제288호	마을어업	정착성 수산동식물	설천면 동흥지선	162,000	2018.06.12	남해군 설천면	동흥어촌계	2018.06.11	재개발	
마을어업 제289호	마을어업	정착성 수산동식물	설천면 봉우지선	145,000	2018.06.12	남해군 설천면	강진어촌계	2018.06.11	재개발	

○ 소멸 어업권 현황

면허번호	어업의종류	포획물	어장	면허 면적	며칭기가	어 업 :	권 자	비고	
진에진호	(어업방법)		위치	(m²) 면허기간 —		주 소	성 명	0,112	
마을어업 제 128호	마을어업	정착성 수산동식물	설천면 동흥지선	255,000	2008.06.12 ~ 2018.06.11	남해군 설천면	동흥어촌계	면허기간 만료	
마을어업 제 129호	마을어업	정착성 수산동식물	설천면 봉우지선	185,000	2008.06.12 ~ 2018.06.11	남해군 설천면	강진어촌계	면허기간 만료	

남해군 공고 제2018 - 737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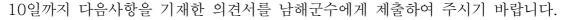
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「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20일

남 해 군 수

- 1. 자치법규명: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
- 2. 개정이유
 - 가. 2016년 국토교통부 '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'으로 공모 선정되어 추진한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이 2018년 완공예정에 있음.
 - 나.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중 간이역 조성사업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
- 3. 주요내용
 - O 간이역 명칭과 위치 정의(제4조)
 - O 간이역 이용에 관한 사항(제5조~제8조)
 - O 간이역 시설의 관리 및 운영위탁 관한 사항(제9조)
 - O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제10조~제17조)
- 4. 의견제출
 - 가.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



-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- 나. 의견 제출처
- 주소 : 우52422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
- 연락처 : 전화 055-860-3603, 팩스 860-3750, e-mail : miok1024@korea.kr

5. 기타

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미래전략사업단 미래전략팀(860-3603)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		의	견 /	세	출	서		
1. 자치	법 규	명		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				: 조례
2. 의견	성명	(명칭)				전 호) 번 호		
제출자	주	소							
자치법 ⁻	구아	1기요	찬 성	여 부			의	견	
/ ハハ日 	II 12.	91.0	찬성	반대			<u> </u>	٦ <u>'</u>	

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8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성명: (서명 또는 날인)

남해군수 귀하

남해군 조례 제 호

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해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 로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보물섬 800리길" 이란 남해군(이하 "군" 이라 한다)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어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말한다.
- 제3조(보물섬 800리길의 조성 및 관리) ① 남해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보물섬 800리길(이하 "800리길"이라 한다)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800리길 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800리길 구간의 연결 및 정비사업
 - 2. 800리길과 연계한 농촌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
 - 3.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제4조에 따른 간이역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(이하 "간이역 조성사업"이라 한다)
 - 4. 각종 대회ㆍ행사 개최 등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
 - 5.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・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4조(간이역의 설치 등) ① 군수는 800리길이 지나는 주요 지점에 복합시설물인 간이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간이역(이하 "간이역"이라 한다)의 명칭·위치 및 시설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.
- 제5조(간이역의 이용 신청 등) ①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용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방문, 전화,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간이역 시설 중 공연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연장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군수는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- 1.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- 3.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
 -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 - 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
- 제6조(이용료) ①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.
 - 1. 게스트하우스: 「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별표 2에 따른 이용료
 - 2. 야외판매시설: 「남해군 정기·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」 별표에 따른 사용료
 - 3. 공연장: 별표 2에 따른 이용료
 - 4. 소규모 놀이시설: 놀이시설 1대당 1회 이용 시 1,000원
 - ② 군수는 간이역 시설 이용료를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제7조(이용료의 감면) ① 군수는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 이 경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날만 감경한다.
 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이하 "국가 유공자"라 한다)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국가유공자의 배우자
 - 나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
- 다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또는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- 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(이하 "독립유공자"라 한다)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독립유공자의 배우자
 - 나.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- 3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(이하 "5·18 민주유공자"라 한다)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5 · 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
 - 나.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5·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 - 다. 5·18민주유공자 중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-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(이
- 하 "특수임무유공자"라 한다)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
 - 나.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- 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1 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
- 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
- 7. 군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
- 8. 군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
- 9. 65세 이상인 사람
- 10.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위해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
-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역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- 1. 국가, 경상남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
- 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
- 3.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.

- 제8조(이용료의 반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. 다만,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「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별표 3에 따른다.
 - 1. 군의 행사 또는 천재지변,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간이역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이용료 전액
 - 2.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: 납부한 이용료 전액
 - 3. 사용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: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후 환급
- 제9조(간이역의 관리 및 운영 위탁) 군수는 간이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,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군수는 800리길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하다)를 둔다.
 - 1. 800리길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
 - 2. 간이역 조성사업
 - 3.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
 - 4.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
 - 5.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 - 1. 당연직 부위원장: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담당 부서장
 - 2. 위촉직 부위원장: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
 -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남해군의회 의원
 - 2.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
 - 3. 관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4. 농・축・수산물 유통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

- 5.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사업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(回避)하지 아니한 경우
 - 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- 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조사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경우
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 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,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.
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5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 - ② 간사는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.
- 제16조(의견 청취)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1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간이역 명칭·위치 및 시설의 구성(제4조제2항 관련)

명칭	위치		시설구성	비고
		실내 1층	 ○ 휴게음식점 58.14㎡ ○ 특산물판매점 106.02㎡, ○ 안내소· 매표소· 화장실 ㆍ물탱크실· 창고 279.92㎡ 	
동대만 간이역	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-1번지 일원	실내 2층	○ 향토음식점 99.93㎡ ○ 게스트하우스 98.77㎡	연면적 : 642.78㎡
		실외	○ 공연장 50.8㎡ ○ 야외판매시설 ○ 소규모 놀이시설(미니 기차 등)	건축면적 : 378.69㎡
		그 밖의 시설	간이역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된 공용시설, 각종 시설물, 조형물,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	

[별표 2]

시설 이용료(제6조제1항제3호 관련)

		급	ОН	
명칭	기준	평일	토요일. 일요일. 공휴일	비고
야외공연장	4시간/1회	30,000	36,000	

※ 사용시간

- 오전 : 09:00 ~ 13:00(4시간)

- 오후 : 13:30 ~ 18:00(4시간 30분) - 야간 : 18:30 ~ 23:00(4시간 30분)

[오전, 오후, 이간을 각1회로 하며,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이용한 것으로 본다]

※ 초과 사용시 가산 기준

- 1시간미만 : 다음 회 사용료의 20%를 가산한다.

-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: 다음 회 사용료의 50%를 기산한다.

- 2시간이상: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.

(다음 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할 수 없다.)

_	[별	ΤI	TJ	14	÷	L	М	1
	≌	ᄱ	~7	Н	오	ᇧ		н

문화체육시설 예약시스템(www.namhae.go.kr/sports/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공연장 이용신청서(제7조제2항 관련)

•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적지 않	며, []에는 해당하는	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신고번호(연도-2	/ 기관코드-업무구분		접수일자		처리일자	
신 청 인	성명		생년월일(사업지	ト 또는 밥	[인등록번호)	(남 / 여)
	주소			(전화번	호 :)
	이 용 일	20	년 월	일(요일)	
이용일시	이용시간	오전 09:00~13:00 []	오후 13:30~1 []	8:00	야간 18:3 [0~23:00
VI STILS	목적					
이용내용	이용자시설 (장비)					

- 목적란에는 공연장에서 하려는 공연 등의 개요를 적습니다.(이용인원을 포함한다.)
- 이용자가 별도의 설비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시설란에 시설명세를 적습니다.

「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간이역 내 공연장 이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남해군수 귀하

	신청 안내							
수수료	없음	처리부서						
 사용료	없음	처리기간	5 일					

210mm×297mm [보존용지(2종) 70g/m²]

【 현행 조례 】

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16.09.23 조례 제219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해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보물섬 800리길"(이하 "800리길"이라 한다)이란 남해군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어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말한다.
- 2. "800리길 조성사업"이란 800리길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간이역 조성 사업 등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융·복합 관광 자원화 사업을 말한다.
- 3. "간이역 조성사업"이란 800리길이 지나가는 주요 지점에 지역특산물 판매, 관광, 휴식, 전망, 주차 등이 가능한 복합시설 조성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조성 및 관리) ① 군수는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.

- 1.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800리길 구간 연결 및 정비사업
- 2. 800리길과 연계한 농촌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
- 3.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간이역 조성사업
- 4. 각종 대회·행사 개최 등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
- 5.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
- 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4조(위원회의 설치) 군수는 800리길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800리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

- 의·자문한다.
- 1. 800리길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간이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
- 3.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
- 4.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
- 5.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(위촉직 및 당연직 각 1명)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당연직 부위원장은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남해군의회 의원

- 2.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
- 3. 관광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4. 농축수산물 유통분야에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
- 5.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
- 제7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.
 - ② 위원이 건강상 이유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- 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 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 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 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제10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11조(수당 및 여비) ·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남해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첨]

1. 관련 법령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- **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., 2014.1.7., 2015.1.20.>
 - 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2.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 -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・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・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사용・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・수익하게 할 수 있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·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(原狀)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·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⑤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12.26.]

- 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.
 - ④ 삭제 <2010.2.4.>

[전문개정 2008.12.26.]

- 제23조(사용료의 조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(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)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・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(減額)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7.>
 -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8.12.26.]

- **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.>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.>
 -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 •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2.4., 2015.1.20.>
 -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10.2.4., 2015.1.20.>
 -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 -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 -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2.4., 2015.1.20.>
 - 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 - 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 - 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 - 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 - 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8.12.26.]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- **제14조(사용료)**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, 전세금의 산정,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3.6.21.>
 -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. <신설 2013.6.21.>
 -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 <신설 2016.7.12., 2017.7.26.>
 -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,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. <개정 2013.6.21., 2014.7.7., 2016.7.12.>
 -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8.4., 2013.6.21., 2016.7.12., 2017.7.26.>
 -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. <신설 2010.8.4., 2013.6.21., 2016.7.12.>

[전문개정 2009.4.24.]

제16조(사용료의 조정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·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7.7.>

[전문개정 2009.4.24.]

- 제21조(수탁재산의 위탁료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7.20.>
 -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. <신설 2015.7.20., 2016.7.12., 2017.7.26.>

1. 수입

- 가.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, 이용료 등
- 나.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·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(轉貸)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
- 다.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·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

2. 지출

- 가.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,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
- 나.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,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
-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7.20.>
-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・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,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. <개정 2010.8.4., 2013.6.21., 2015.7.20., 2016.7.12.>
-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4., 2013.6.21., 2015.7.20.>
-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3.6.21., 2014.11.19., 2015.7.20., 2017.7.26.>

[전문개정 2009.4.24.] [제목개정 2015.7.20.]

- 제22조(관리상황의 보고 등)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6.21.>
 -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·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6.21.>
 -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, 관리수탁자,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,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<선설 2013.6.21.>
 -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3.6.21., 2014.11.19., 2017.7.26.>

[전문개정 2009.4.24.]

남해군 공고 제2018 - 742호

남해군 방재성능목표 공표

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「남해군 방재성능목표」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22일

남 해 군 수

- 1. 목 적 :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.
- 2. 근 거: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(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·운용)
- 3. 방재성능목표

자치단체명 :	강우지속기간				
/ 기선세명	1시간	2시간	3시간		
남해군	95mm	145mm	160mm		

- 4. 방재성능목표 적용 대상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
 - 가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
 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(遊水池)
 - 다. 「하수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

- 라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
 - 1)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
 - 2) 「하수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 물·시설 중 빗물펌프장
 - 3) 「도로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
 - 4)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
 - 5) 「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」(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)에 따른 고지(高地)배수로

5. 방재성능목표 적용 등

- 도시지역*내에 기 설치된 방재시설**에 대해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 처리 능력 등 방재성능을 평가
 - 평가결과 기존 방재시설의 성능 부족으로 내수침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는 지역에 대한 방재정책*** 수립을 위한 배수구역 내 홍수유츌량 산정시 방재성능목표 적용
 - *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주거 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
 - ** 하수관로, 배수(빗물)펌프장, 우수유출저류시설, 저류지, 유수지, 소하천 등
 - *** 기존 방재시설 정비(신설·증설·확장 등) 또는 배수구역 내 홍수량 분담을 위한 배수체계 개선(우수유출저감시설, 고지배수로 설치 등) 등의 구조적·비구조적 개선대책
-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설계기준에 따라 계획한 방재시설 *의 성능이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
 - 평가 결과 계획한 방재시설의 성능이 부족할 경우 배수체계 개선** 방안 검 토를 위한 배수구역 내 홍수유출량 산정 시 적용
 - * 하수관로 등 방재시설의 계획(규격·규모 등)은 개별법령에 따른 관련 설계 기준에서 제시한 재현기간(설계빈도)을 적용하여야 함
 - ** 홍수량 분담을 위한 유수지, 우수유출저감시설, 고지배수로 설치 등의 개선 대책
-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
 -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, RRL 모델, ILLUDAS 모델, SWMM 모델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
- 6.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: 공고일부터

남해군 공고 제2018 - 745호

2018년 남해군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관리·운영 위·수탁 현황 공고
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(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) 및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제5조(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) 및 제8조(해수욕장 관리위탁·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25일

남 해 군 수

□ 해수욕장별 관리 운영 위·수탁 현황

해수욕장명						위탁자		수탁자				이 용 안 내				
상	주	은	모	래	비	치				상	주	번	영	회	7	055-863-3573
송	정	솔	바	람	해	변				송	정	번	영	회	7	055-867-3414
설	리	하	-	수	욕	장	1.1	 11		설	리	번	영	회	8	010-4849-6733
두	77	<u>0</u>]	77	해 4	수 욕	- 장	남	해	군	두	곡	번	영	회	7	010-4930-3277
7	- •	펕	土							월	포	번	영	회	7	010-8520-8287
사	촌	하] -	 수	욕	장				사	촌	번	영	회	8	010-4561-0571

□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

	해	수	욕	장	명		개장기간	개장일수	개 장 시 간
상	주	은	모	래	비	치	2018. 7. 06 ~ 8. 19	45	09:00 ~ 19:00
송	정	솔	바	람	해	변	2018. 7. 13 ~ 8. 19	38	09:00 ~ 19:00
설	리	해	2	À	욕	장	2018. 7. 13 ~ 8. 19	38	09:00 ~ 19:00
두	곡 •	월	平 5	해 -	수 욕	장	2018. 7. 13 ~ 8. 19	38	09:00 ~ 19:00
사	촌	해	2	Ì	욕	장	2018. 7. 13 ~ 8. 19	38	09:00 ~ 19:00

남해군 공고 제2018 - 751호

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공고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26일

남 해 군 수

		I						
시행자								
(점용・사용자)	대표자 (성 명)	손정0 주소 경남 남해군 남형						
소	하천명	상신천						
	위치	남해군 남해군창선면 상신리 494번지						
공사 (점용 • 사용)	면적	1.4 m²	폐천부 여		m²			
개요	기간	2018. 6. 26. ~ 2023. 6. 25.						
	목적 및 사유	우수관 매설						